

##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-5호

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중 「반송정보 제공서비스 이용 수수료」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. 4. 23.

미래창조과학부장관

###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이용 수수료

- 수수료 :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
- 반송정보 제공수수료 : 건당 30원

### 부 칙

이 고시는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